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의 공고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2. 채권신고기간 : 2025. 4. 11. ~ 2025. 4. 24. (09:00 ~ 18:00 / 12시~13시는 점심시간이 였으니 그 외 시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서류의 종류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서	1부
증빙서류 및 위임장(대리인 신고시 작성)	1부
금융거래정보(주식보유수) 이용 동의서(주주에 한함)	1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접수증	1부

4. 신고서 작성요령

\* 모든 신고서류와 증거서류는 1부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서 :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1부 작성.

- 거래명판 및 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신고는 채권자의 채권금액 전부를 신고하시고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금액 전부</li> <li>· 약정이자의 계산은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것과 개시결정일 이후의 것을 구분하여 작성하세요</li> </ul>
의결권의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권 행사금액을 기재 (통상 채권의 금액과 같음)</li> </ul>
채권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및 전자우편주소 기재</li> </ul>
채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li> <li>· 회생채권 : 채권발생의 시기, 발생원인, 이자의 약정 유무, 이자율, 변제기 등</li> <li>· 회생담보권 : 담보권의 목적물, 담보권의 내용 등</li> <li>· 주식·출자지분 : 주식·출자지분의 종류와 수(주권번호 기재 요) 또는 그 수액</li> </ul>
집행권원·중국판결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확정여부를 기재</li> </ul>
소송 계속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관할법원, 소송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li> </ul>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채권 신고시 첨부한 증빙서류 일체를 빠짐 없이 기재</li> </ul>

## 2) 증빙서류 및 위임장, 신고접수증의 종류 및 작성요령

종류	내용	부수	비고
채권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서 등)	차입증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어음 (전자어음보유확인서)의 ‘원본확인필’ 한 사본 2부 - 어음의 경우 최종소지자만 채권신고 가능 - 물품납품계약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인수증사본 첨부할 것 - 채권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첨부할 것 - 전부명령의 경우 법원결정문 사본 첨부할 것	1부	기타 경우는 채무자회사에 문의
인감증명서	채권자가 개인이면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도 첨부)	1부	

종류	내용	부수	비고
소명자료 (등기,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1부	
제출자 자료 (신분증,위임장)	채권자 본인 직접신고시 신분증사본 대리인이 신고시 위임장(인감날인)제출	1부	
신고접수증 (선택사항)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기재	1부	반송용우편 동봉시 송달

## 5. 제출신고서류의 순서

<p>1) 법인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채권신고접수증</li> <li>② 회생채권 등 신고서</li> <li>③ 회생채권 등 신고내역서(예시참조)</li> <li>④ 채권 증빙서류(계약서 등 사본)</li> <li>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li> <li>⑥ 법인등기부등본</li> <li>⑦ 위임장(대리인 신고시 필요)</li> </ul>	<p>2) 개인(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채권신고접수증</li> <li>② 회생채권 등 신고서</li> <li>③ 회생채권 등 신고내역서(예시참조)</li> <li>④ 채권 증빙서류(계약서 등 사본)</li> <li>⑤ 개인인감증명서</li> <li>⑥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li> <li>⑦ 위임장(대리인 신고시 필요) 또는 신분증 사본(본인 신고시)</li> </ul>
---	--

※ 주주의 경우는 금융거래정보(주식보유수) 이용 동의서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본확인필’된 사본을 제출하세요.(원본제출하지 마세요.)

## 6. 협조 및 유의사항

1)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한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을 관리인측과 연락하여 신고하는 회생채권 등이 위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만일 회생채권자들의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지만,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자들의 목록은 관리인에 의하여 신고기간 이전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채권신고기간 동안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채권신고서류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채권신고 장소 안내

- 1) 신고방법 : 서울회생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 3) 교통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법원·경찰청) 11번 출구 하차
- 4)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9. 조사기간 및 이의절차 안내

- 1) 조사기간 : 대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 중 ‘회생(회단·회합)’ 부분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의절차 :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대상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이의 대상인 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